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3

2023년 12월 19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2월 6일, 김혜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영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활동에서의 교육감,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교육활동에서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

사.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 및 갈등의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9조)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김혜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83호로 발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와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있게 규정하고,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권리와 교권 간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1)]

○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교원의 대처를 강화하고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2)] 교육부에서도 교권보호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3)]

○ 이후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3주체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갈등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을 제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4)]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조례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발표되기 이전 제320회

---

1) 윤 대통령 "불합리한 교권 침해 조례 개정 추진", SBS NEWS, 2023.7.24.,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2023.8.23.
2)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육부 보도자료, 2023.9.21.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교육부, 2023.9.1.
4)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3.11.28.

임시회에서 학생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5)]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교육부의 조례예시안을 기초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갈등발생시 원만한 처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1) 조례안의 구성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총 5장, 22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동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교육감·학교의 장의 책무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권한)와 책임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교육감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생활에 관한 여 학생·보호자·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2023,8.1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채수지 의원 외 66인 발의, 2023.8.1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김혜영 의원 외 66인 발의, 2023.8.14.

마지막으로 안 제4장은 민원의 처리 절차와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한 중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장은 보칙에서 포상, 사무위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의 예시 권고안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원의 처리 절차(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는 보호자가 자신과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한 학교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하되, 만일 학교의 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같은 법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하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조항들은 교원-학부모간 소통 체계 개선을 위해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3자를 고려한 균형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과 관련하여 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서는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별로 통합민원팀이 구성·운영되어 있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민원의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교육갈등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1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6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 대상과 그 범위(8명~12명)에 대한 사항, 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을,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위원장의 선임 규정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들은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

는 바, 이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예시안의 과도한 포괄 위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부칙(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에서는 별도의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최근 개정된 상위법의 발효 시기를 고려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시행 시기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조항이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공포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부칙 제1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은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2023.9.27.개정),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데 따른 것으로,[6] 조례의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부칙 제2조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 ⑪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인권조례’) 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번에 상정 예정인「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금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선처리된다면 동 부칙 조항은 실효적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를 폐지할 경우 기존 조례와 새로 제정되는 조례 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7].

[표-1] 입법고문 자문결과

질의내용	가능	불가능
신규 조례 제정안의 부칙에 의한 기존 조례 폐지 가능 여부	- 신규 제정 조례인 동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제도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진 법령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부칙으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조례안으로 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에서 현존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것으로 소극적·사후적 개입이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지방행정 교육기관 설치권이나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님.	- 동 조례안과「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및「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의 목적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양립불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동 조례안의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만일 기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기존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법제처「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담은 신규 조례가 동시에 상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동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단독으로 먼저 처리한 경우에는 부칙에 동 조례 폐지조례안이 포함된 부칙을 삭제하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동일한 입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시에 모두 가결하는 것은 이론상 허용되지 않음(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2021.12. 110내지 140쪽 참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안의 경우 부칙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폐지 조례와 기존 조례 폐지에 관한 부칙을 담은 동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는 검토하지 아니함.

나.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동 조례안을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의 대체 입법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개별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의 책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두 조례의 병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재정분석담당관의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 동 조례안 시행시 실태조사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및 지원사업비, 학교구성원 대상 교육 및 연수비, 컨설팅비, 운영비(민원대응팀 신설, 교육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 연평균 157억 6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다만 전체 발생비용 중 대부분의 비용이 별도의 민원대응팀 처리환경 조성에 소요되고 있는 바, 동 조례안 제12조의 민원대응팀 운영은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동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 상세내역(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0조제1항제1호 (실태조사)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제10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2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학교구성원대상 교육 연수, 학교구성원간 소통역량 강화)	107,820	107,820	107,820	107,820	107,820	539,100
	제10조제1항제4호 (학교별 맞춤·참여형 컨설팅)	8,800	8,800	8,800	8,800	8,800	44,000
	제10조제3항 (상호존중 학교의 날)	10,742	10,742	10,742	10,742	10,742	53,710
	제12조,제13조 (민원대응팀 처리환경 조성)	13,770,900	14,671,800	15,572,700	16,473,600	17,374,500	77,863,500
	제16조 (위원회 구성)	3,920	3,920	3,920	3,920	3,920	19,600

	제20조 (유공 개인 및 단체 포상)	20,300	20,300	20,300	20,300	20,300	101,500
	소계(b)	13,967,482	14,868,382	15,769,282	16,670,182	17,571,082	78,846,410
□ 총 비용(a-b)		13,967,482	14,868,382	15,769,282	16,670,182	17,571,082	78,846,410

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 끝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3.12.13.(수)~ ‘23.12.17(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7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1건으로 이는 교사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무를 강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동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총 718건이며, 이 중 동 조례안 제12조(민원처리 절차)[8]에 “교원이 책임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교원의 책임의무 위반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①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 부칙 제2조를 삭제함.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83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는 상호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및「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폐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부칙 제2조 삭제).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및제3항, 제15조제1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이 시행되기 전 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제3항, 제15조제1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폐지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4. “부모 등 보호자”란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

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학교구성원”이란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갈등”이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8. “중재”란 학교구성원 간의 합의 또는 화해로 해결이 어려운 갈등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학교구성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학칙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규정 등(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학칙 등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책에 의거하여 학교단위에서의 실행방안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등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갈등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상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교의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4.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상담,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5. 가족, 교우관계, 병력,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학생의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습자로서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개인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습자로서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8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①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권리·권한

②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
2.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책임
3.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임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임
5. 학생이 공정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①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부모조직을 구성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2.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

②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2.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
4.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
5.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제10조(상호 존중 학교문화) ① 교육감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와 관련한 학교구성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학교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과 유사한 성격의 기념일에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보호자 간 소통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①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원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3.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이 이관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 학교누리집 또는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을 접수·관리하거나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①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교육활동 갈등관리) ①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및 중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2. 학교구성원 갈등 예방 대책 수립
3. 학교구성원 갈등중재의 기준 마련
4.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이 학교구성원 갈등 중재를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 갈등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및 보호자를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2.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3.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갈등의 중재) ①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민원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학교구성원간의 권리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요청(이하 “중재 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고, 갈등 중재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및 중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 요청 사항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고 종결한다.

1. 갈등관계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경우
2. 교육활동의 침해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의 중재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4. 중재 요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 ① 제17조에 따른 갈등 중재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결과를 당사자와 중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중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및 제3항, 제15조제1항의 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이 시행되기 전 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본다.